# 병역의무자(입영 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병역의무자(입영 전) ]

이 콘텐츠에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병역면제, 병역연기, 국외여행허가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병역의무자(입영 전) ..... 1
1. 병역의무의 이해 ..... 4
1.1.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4
1.1.1.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 4
1.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5
2.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9
2.1. 병역판정검사(신검) ..... 9
2.1.1. 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 9
2.1.2.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 10
2.1.3. 병역판정검사의 방법 ..... 12
2.1.4.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 12
2.1.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 16
2.2. 병역처분 ..... 17
2.2.1.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17
2.2.2. 병역처분의 변경 ..... 20
3.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23
3.1. 병역면제 대상 ..... 23
3.1.1.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 23
3.2. 병역감면 대상 ..... 24
3.2.1.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24
3.2.2.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 27
3.2.3.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28
3.2.4.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 30
3.3. 입영연기 대상 ..... 32
3.3.1.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 32
3.3.2.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 34
3.3.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 36
3.3.4.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 신청 ..... 37
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40
4.1.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 40
4.1.1. 허가신청 ..... 40
4.1.2. 허가 연장 신청 ..... 43
4.1.3. 허가의 취소 및 처벌 ..... 43

# 1. 병역의무의 이해

## 1.1.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 1.1.1. 대한민국 남성의 병역의무

#### 남성은 언제부터 병역의무가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있으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및 「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참조).
-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됩니다(「병역법」 제3조제4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이 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제2항).
-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병역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콘텐츠 명 | 내용 | 링크 연결 |
|---|---|---|
| 『병역의무자(현역)』 | ▪ 현역병<br>▪ 전환복무<br>▪ 상근예비역<br>▪ 승선근무예비역<br>▪ 장교 및 부사관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br>▪ 예술·체육요원<br>▪ 공중보건의사<b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상근·승선근무예비역)』 | ▪ 상근예비역<br>▪ 승선근무예비역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대체역)』 | ▪ 대체역<br>▪ 대체복무요원<br>▪ 양심적 병역거부 | 바로가기 |
| 『예비군 및 민방위』 | ▪ 예비군<br>▪ 동원훈련<br>▪ 민방위 | 바로가기 |
| 『대한민국 여군』 | ▪ 여군 장교<br>▪ 여군 부사관 | 바로가기 |

### 1.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위해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제1항·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구분 | 국적 선택 기간 |
|---|---|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br>※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일 이전에도 할 수 있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 |
|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22세가 되기 전까지 |
|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1항 참고).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그 뜻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2항).

▪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제3항·제4항).

> ※ 그 밖에 국적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비자, 여권, 국적』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외국국적동포인 남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참조).

-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습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제외)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위의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3항).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대한 특례는 2022년 10월 1일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국적법」 부칙 제2조제2항).

## 입영희망 신청제도로 영주권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려고 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3조제7호).

※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4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의무이행-국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 제도) 참조).

| 구분 | 내용 |
| --- | --- |
| 신청대상 |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br>•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을 취득한 사람<br>•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br>•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사람<br>√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br>√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br>•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 신청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 |
| 제출장소 | 재외공관<br>지방병무청 민원실<br>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br>병무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 문의전화 | 병무청 병무민원(☎ 1588-9090) |

## 2.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처분

### 2.1. 병역판정검사(신검)

#### 2.1.1. 병역판정검사(신검)의 시기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단서).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延期)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본문).

※ 다만, 18세인 사람은 신체등급의 판정결과가 5급이나 6급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6항 단서).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1항).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2항·제3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구분 | 내용 |
|---|---|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방법 |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br>√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 |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신청·변경 | √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 가능<br>√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 부모 및 형제자매 주소지 거주 등의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가능<br>√ 본인선택한 사람(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을 포함)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또는 장소 변경 가능 |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취소 제한 | √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려는 경우<br>√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된 경우<br>√ 지방병무청장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한 사람이 본인선택으로 일자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Q.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병역판정검사를 받나요?**

A.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검사일 30일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참조).

### 2.1.2. 병역판정검사의 통지

####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언제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검사일부터 30일 전에 받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구분 | 통지 시기 |
|---|---|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 30일전 |
|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br>√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br>√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br>√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br>√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br>√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 7일전 |

##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2조제3항).

| 구분 | 송달방법 |
|---|---|
| 우편송달 | 직인의 인영(도장을 찍은 모양)이 인쇄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수령증을 받아야 함)한 경우<br>※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
| 전자송달 |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br>√ 병역의무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

**Q1. 가족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함)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 받은 세대주등은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병역의무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세대주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그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제6조제5항, 제7항, 제85조 및 제95조제5항).

**Q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3항).

### 2.1.3. 병역판정검사의 방법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전단).

▪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정신건강의학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의학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장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1항).

※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4항 후단).

> ※ 신체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을 위한 심리검사

▪ 심리검사는 언행관찰·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본문).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1조제5항 단서).

> ※ 심리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1조제2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병역판정검사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해도 되나요?**

A1.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7조제1항).

**Q2. 무릎 십자인대를 파열시키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A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 2.1.4.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 국외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 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의 연기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 --- |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br>**√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br>**√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br>**√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br>**√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 ---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br>**√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br>**√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Q1. 재외국민 2세는 누구를 말하나요?**

A1-1. "재외국민 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전단).

√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 제외)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A1-2.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5항 후단).

**Q2.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7항).

√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3호).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3항).

## 그 밖에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대한민국 남성은 30세까지 병역판정검사 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2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제2항].

|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 |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위한 서류 |
|---|---|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병무용진단서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로 한정)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br>√ 병역판정검사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br>√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br>√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br>√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 다만,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의 의무이행일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참조).

※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단서).

> ※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다만,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1.5.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시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과 검사시기는 언제인가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병역처분을 받고 4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징집(소집)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2제1항).

▪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이미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등의 연기사유가 끝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다만,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
- 병무청장이 소집 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한 사람
- 학력을 고려하여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및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 미리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재병역판정검사의 검사시기**

▪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집·소집 또는 의무이행일의 연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실시
  -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징집·소집이 연기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는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에 해당하여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 입영일에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은 지체 없이 실시

▹ 그 밖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간 병역판정검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

※ 재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와 동일하며, 이 콘텐츠 <병역판정검사의 방법>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2. 병역처분

### 2.2.1.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병역처분을 판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신체등급은 신장·체중과 질병·심신장애를 다음과 같이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합니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

| | 판정기준 |
|---|---|
|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br>▪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체중조절에 따른 체중 변동 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의 판정을 보류하고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음<br>▪ 신장·체중 재측정 대상자 중에서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측정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신체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음 |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br>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br>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br>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br>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br>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br>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라 등급을 판정) |
|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 | ▪ 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의 최종 판정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에 따라 판정(이 경우 그 등급이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등급이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급으로 판정함)<br>▪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수석병역판정검사전무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력 등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절할 수 있음<br>√ 신체등급이 4급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서 치료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br>√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너스수술 등의 수술이나 교정술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치료가 완료되면 상태가 좋아질 여지가 있는 사람 |

### 학력과 신체등급 등을 고려해서 병역처분을 결정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전단).

| 대상 | 병역처분 |
|---|---|
|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
|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 전시근로역 |
|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 병역면제 |
|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

※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제1항 후단).

▪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제3호).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신체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 병역처분 기준 | 현역병입영 대상 | |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신체등급과 관계없이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가 되는 사유**

| | |
|---|---|
| **보충역 대상** |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br>▪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br>▪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전시근로역 대상** | ▪ 고아 및 귀화한 사람<br>▪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br>▪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 **병역면제 대상**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 |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링크 연결 |
|---|---|---|
| 『병역의무자(현역)』 | ▪ 현역병<br>▪ 전환복무<br>▪ 상근예비역<br>▪ 승선근무예비역<br>▪ 장교 및 부사관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br>▪ 예술·체육요원<br>▪ 공중보건의사<b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 바로가기 |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 본인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부터 12월 이내에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제1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80조제2항).

### 2.2.2. 병역처분의 변경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참고).

▪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으려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2항 참고).

**수형자(受刑者) 또는 귀화자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수형자, 귀화자 또는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구분 | 대상 |
| --- | --- |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br>▪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br>▪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br>▪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br>▪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br>▪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br>▪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 병역판정에서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복무하고 싶어요.

####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1항 전단 참고).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
-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 병역이 면제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경우 다음의 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제2항).

| 대상 | 처분기준 |
|---|---|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 |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 | 병역처분 불변경 |
| 전시근로역으로서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해서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 |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만 해당하며,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 변경<br>※ 다만,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된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링크 연결 |
|---|---|---|
| 『병역의무자(현역)』 | ▪ 현역병<br>▪ 전환복무<br>▪ 상근예비역<br>▪ 승선근무예비역<br>▪ 장교 및 부사관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br>▪ 예술·체육요원<br>▪ 공중보건의사<b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 바로가기 |

## 3. 병역면제·감면 및 입영연기

### 3.1. 병역면제 대상

#### 3.1.1. 심신장애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병역면제

**병역준비역이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을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이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병역준비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급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본문 참고).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제출서류 |
|---|---|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 병역면제원서<br>▪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 병역면제원서<br>▪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포함) | |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으로 확진된 사람 | ▪ 병역면제원서<br>▪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br>▪ 병무용진단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br>※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 | - |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5항).

####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사람에 대한 처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 북한에서 온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병역준비역으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

▪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2. 병역감면 대상

### 3.2.1.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

> **Q.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병역을 감면받기 위한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A.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가 해당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및 제13조제1항).

|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
| --- | --- |
| ▪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br>▪ 생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br>▪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br>▪ 장인, 장모와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br>▪ 혼인한 형제자매(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br>▪ 조부모가 백부·숙부·고모가(家)(외조부모가 외숙부·이모가(家))의 생계곤란 등 사유로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 및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br>▪ 형제 중 병역감면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 공부상 이복형제나 이부형제로 확인되고 1년 이상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br>▪ 부모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 백부, 숙부, 혼인한 누나 또는 이모 등 병역의무자의 방계가족과 생계를 같이할 경우 그 방계 가족<br>▪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세대를 달리하는 신부, 수녀 및 승려가 가족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 가족(본인 포함)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사람

▹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이 일정기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구분 | 대상 |
|---|---|
| ㉠부양의무자 |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제외) |
| ㉡피부양자 | ▪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br>▪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br>▪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으로 소집된 사람<br>▪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
| ㉢자활가능자 | ▪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br>▪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br>▪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함 |

▪ 현역병입영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감면 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전단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가사상황 신고서 1부
-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병무용진단서(가족 중에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 1부
- 그 밖에 병역감면에 필요한 구비서류 각 1부

▪ 위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재산과 수입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재산과 수입 기준 확인하기

▪ 병역감면과 관련한 가족의 재산과 수입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 구분 | 기준 |
|---|---|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그 가족의 재산 범위 | √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br>√ 차량,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등 그 밖의 재산<br>√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br>√ 현금, 예금, 보험(해약 시 환급금), 그 밖의 보상금<br>√ 유가증권, 가상자산, 채권 |
| 병역감면에 해당하는 가족의 월수입액 범위 |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 중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함(다만, 퇴직소득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 때에는 재산으로 보며, 연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봄)<br>√ 위에서 정하지 않은 소득은 총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액을 수입으로 함<b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급여 중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자활급여는 가족의 수입으로 함 |

▪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과 관련한 가족의 재산액과 수입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참조).

| 구분 | 금액 |
|---|---|
| 재산액 | 9,856만원 이하 |
| 월수입액 | ▪ 1인 가구: 1,025,695원 이하<br>▪ 2인 가구: 1,679,717원 이하<br>▪ 3인 가구: 2,143,614원 이하<br>▪ 4인 가구: 2,597,895원 이하<br>▪ 5인 가구: 3,022,688원 이하<br>▪ 6인 가구: 3,422,381원 이하<br>▪ 7인 가구: 3,806,060원 이하 |

※ 8인 이상 가족: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83,679원씩 증가

※ 그 밖에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따른 병역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2. 예술·체육 분야 추천에 따른 병역감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추천을 받으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어요.**

**국제대회에 입상한 사람 등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1항제1호·제4호,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 구분 |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 |
|---|---|
| 국제예술경연대회의<br>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br>▪ 음악경연대회<br>▪ 무용경연대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br>√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br>√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 |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전수장학생 선정 종목' 중에서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종목 |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가무형유산 전수이수자 |
| 올림픽대회 |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 아시아경기대회 | 1위로 입상한 사람 |

※ 예술·체육요원의 복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병역의무자(보충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2.3. 수형, 귀화 및 성 전환 사유에 따른 병역감면

#### 수형(受刑)사유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될 수 있어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제2호가목).

| 구분 | 수형의 사유 |
|---|---|
| 보충역 편입 대상 |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br>▪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대체역으로 편입될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1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다만, 수형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단서).

## 귀화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귀화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국적법」에 따라 귀화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제3호).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귀화허가가 고시된 관보 사본,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 통지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성을 전환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판결문 사본 및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08호서식).

※ 보충역 및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링크 연결 |
|---|---|---|
| 『병역의무자(보충역)』 | ▪ 사회복무요원<br>▪ 예술·체육요원<br>▪ 공중보건의사<br>▪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 바로가기 |
| 『병역의무자(대체역)』 | ▪ 대체역<br>▪ 대체복무요원<br>▪ 양심적 병역거부 | 바로가기 |

### 3.2.4. 양심의 자유,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 양심의 자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음)
-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 편입신청을 한 사람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며,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4항 본문).

※ 다만,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단서).

▪ 대체역으로 편입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전단,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 본인 진술서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3명 이상의 주변인(신청인의 가족,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말함)이 각각 작성한 주변인 진술서
- 위에 따른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아사유로 전시근로역 등에 편입될 수 있어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고아사유에 해당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대체역으로서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 고아사유 | 제출서류 |
|---|---|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에 따른 가족을 말함)이 없는 사람 |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

▪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위 고아사유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08호서식 및 별지 제115호의2서식).

## 가족 중 전사자나 순직자 등이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중 전사자, 순직자, 전상(戰傷)·공상(公傷)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어요.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은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

▪ 위 처분을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대체역으로서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이 보충역의 편입을 원할 때에는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 보충역 및 대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병역의무자(보충역)』 및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 입영연기 대상

### 3.3.1. 입영연기 대상과 신청방법

#### 누구나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나요?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만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Q. 학교를 휴학한 사람도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학생 입영등 연기 대상은 학교(연수기관 포함)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휴학한 사람으로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본문).

### 일정한 대상에 해당해도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어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및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4조 단서 참고).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 구분 | 기간 |
|---|---|
| 현역입영 | 3일 |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 |
| 군사교육소집 | |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 2일 |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 입영신청을 한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Q.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따른 입영 통지서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참고).

## 입영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을 연기 받으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제2항).

| 입영연기 사유 | 입영연기를 위한 서류 |
|---|---|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병무용진단서 |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 다음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br>√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br>√ 군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병적편입이 예정된 사람(1회에 한정)<br>√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br>▪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

※ 입영일자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 상근예비역-입영일자 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3.2. 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은 일정한 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

**학교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연령까지 입영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 구분 | | 제한연령 |
|---|---|---|
| 고등학교 | | 28세 |
| ▪ 전문대학<br>▪ 전공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 | 3년제 과정 | 23세 |
| | 학위심화과정 | 24세 |
| 대학 | 대학(4년제 과정) | 24세 |
| | 대학(5년제 과정) | 25세 |
| | 대학(6년제 과정) | 26세 |
| | ▪ 의과대학<br>▪ 치과대학<br>▪ 한의과대학<br>▪ 수의과대학<br>▪ 약학대학 | 27세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 26세 |
|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 27세 |
| | 일반대학원<br>▪ 의학과<br>▪ 치의학과<br>▪ 한의학과<br>▪ 수의학과<br>▪ 약학과<br>▪ 의학전문대학원<br>▪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 | 박사학위과정 | 28세 |
| 연수기관 | | 26세 |

**Q. 재학생이라 입영을 연기했으나, 생각이 바뀌어 다시 입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징집이나 소집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6조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 3.3.3.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기 신청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국위선양 등을 한 사람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4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7세
-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7세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30세

**입영연기를 하려면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2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및 별지 제100호의2서식).

| 대상 | 첨부서류 |
| --- | --- |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 국가대표 확인서<br>▪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 제외)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 한국신기록 확인서<br>▪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사람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 상훈 수여 확인서<br>▪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입영을 연기한 것이 취소될 수 있나요?**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해당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5항).

-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해당자만 해당)
- 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3.3.4.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 신청

**국외거주자 등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체재자(國外滯在者)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이 연기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본문).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다만, 입영등의 날짜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영연기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8조).

√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

√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출·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

√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이 경우 24세 이하자로서 6개월 이상 국외체재 관련 증빙서류(국외 재학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출국한 경우 포함]

√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이 출국한 때에는 그 연기 사유 해소일에 출·귀국사항을 확인하여 국외 입영연기 처분

√ 24세 이하자 중 국외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교환 및 방문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대학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24세 이하자 중 외국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감염병 유행 등에 따라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되어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증명서를 제출받아 재학기간 동안 국외 입영연기 처분[다만, 매학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자(휴학자 포함)는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매분기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출·귀국 사항을 확인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 국외거주자 또는 해외이주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 국외거주자 등의 입영연기가 취소 될 수 있나요?

### 국외거주자 등이 국내에서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입영연기가 취소됩니다.

▪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 --- |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br>√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br>√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br>√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br>√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 ---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br>√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br>√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 4.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 4.1.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 4.1.1. 허가신청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25세 이상의 병역준비역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가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

▪ 국외여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제124조제1항 및 제147조제2항 단서·제3항 참조).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 포함)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 포함)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 국외취업자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 국외이주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

※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함

| 구분 | | 제한연령 |
|---|---|---|
| 고등학교 | | 28세 |
| ▪ 전문대학<br>▪ 전공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 | 3년제 과정 | 23세 |
| | 학위심화과정 | 24세 |
| 대학 | 대학(4년제 과정) | 24세 |
| | 대학(5년제 과정) | 25세 |
| | 대학(6년제 과정) | 26세 |
| | ▪ 의과대학<br>▪ 치과대학<br>▪ 한의과대학<br>▪ 수의과대학<br>▪ 약학대학 | 27세 |
| 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 26세 |
|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 27세 |
| | 일반대학원<br>▪ 의학과<br>▪ 치의학과<br>▪ 한의학과<br>▪ 수의학과<br>▪ 약학과<br>▪ 의학전문대학원<br>▪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 | 박사학위과정 | 28세 |
| 연수기관 | | 26세 |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위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했던 사람은 국외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금지하거나 ㉢국외여행을 제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제1항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 구분 | 대상 |
|---|---|
|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br>▪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br>▪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br>▪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br>▪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br>▪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
| ㉡국외여행허가 금지 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 ㉢국외여행 제한 대상 | 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 금지나 국외여행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여행 목적을 작성해야 해요.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와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별지 제132호의2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7조제1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4.1.2. 허가 연장 신청

#### 국외여행을 허가 받았는데,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재(滯在) 중인 사람에게는 허가기간 내에 반드시 귀국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해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5조제1항).

| 구분 | 내용 |
|---|---|
|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
|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
|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통지 대상 |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기간을 연장받으려면 다음의 기간까지 병무청장에게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참조).

- 국외여행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제146조제1항제7호·제9호, 「병역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및 별지 제13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

※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 4.1.3. 허가의 취소 및 처벌

####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개인적인 사유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滯在)하고 있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 국내체재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되는 기간 |
|---|
|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br>**√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br>**√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br>**√ 국내교육기관(고등학교 제외)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개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재학**<br>**√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제외)

|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 |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고용관계에 따라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br>**√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br>**√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br>**√ 그 밖에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 다만,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본인이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국외여행 허가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요.

### 국외여행 허가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 공무원 임용과 특허·인허가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제2호).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제1항제2호).

###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여행을 간 사람은 인적사항이 공개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에 대해서는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1항제1호).